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13 발의연월일: 2021. 6. 30.

발 의 자: 강훈식 · 김윤덕 · 김교흥

한병도 • 이원욱 • 이동주

신영대 • 이성만 • 이장섭

김경협 · 김병기 · 이용빈

의원(12인)

제안이유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하여 판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져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대규모 연쇄부도 및 어음사기 등으로 인한 어음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고자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민간분야에서만 현금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집행시 상생결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공공분야에 있어서도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와 거래 관계에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조속히 대금을 회수하여 경영환경 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 함(안 제22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는 「국고금 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 「지방회계법」 제32조 및 제33조,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1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⑥ <신설>				⑥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
				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
				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
				체는 「국고금 관리법」 제22
				조 및 제23조, 「지방회계법」
				제32조 및 제33조, 그 밖의 다
				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상생결
				제로 지급할 수 있다.